

1100 Trinity Mills 콘도 소유자 협회 내규

제 1 조 - 정의

1.01. **프로젝트 정의.** 프로젝트라는 캐롤턴 시, 델러스 카운티, 텍사스 주에 위치한 모든 부동산이며 이는 토지, 토지 상의 모든 개선사항 및 구조물, 토지의 모든 지역권, 권리, 부속 구조물을 의미하며 본 문서에 첨부된 Exhibit “A”에 상세히 명시되어있다.

1.02. **신고서 정의.** 신고서란 프로젝트에 관한 신고서로서 델러스 카운티 Office of the Clerk, 텍사스 주에 신고된 문서이며 이는 관리 기구의 조항에 따른 신고서의 모든 개정 사항을 포함한다.

1.03. **기타 용어 정의.** 본 내규에 사용된 기타 용어는 신고서에 부여된 의미를 따르며 이는 참조로서 본 내규의 일부가 된다.

제 2 조 - 내규 적용성.

2.01. **법인.** 본 내규의 조항은 1100 Trinity Mills Condominium 소유자 협회라는 비영리 단체의 내규이며 이후 협회라고 지칭한다.

2.02. **프로젝트 적용성.** 본 내규의 조항은 본 내규 1.01 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2.03. **개인 적용성.** 모든 현재 및 미래의 소유자, 현재 및 미래의 거주인, 직원, 또는 프로젝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기타 인원은 본 내규에 명시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프로젝트의 모든 유닛의 취득 또는 임차 또는 유닛의 거주는 본 내규를 수령하고 동의하였음을 의미하며 구매자, 임차인 또는 거주인은 이를 따른다.

제 3 조 - 사무실

3.01. **본부.** 협회의 본부 사무소는 캐롤턴 시, 델러스 카운티, 텍사스 주에 위치한다.

3.02. **등록 사무소 및 등록 에이전트.** 협회는 텍사스 주에 등록된 사무소와 등록된 에이전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유지할 것이다. 에이전트의 사무소는 텍사스 Business Organizations Code 의 조건에 따라 등록 사무소와 같다. 등록된 사무소는 본부 사무소와 같을 수 있으나 같을 필요는 없으며 등록된 사무소의 주소는 이사회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 4 조 -- 회원 자격

4.01. **회원권.** 협회의 회원권은 프로젝트 내 소유자로 구성한다.

4.02. **회원 증명.** 협회 서기에게 해당 인원이 회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때 까지 회원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증명이란 집행된 부동산 증서의 사본 또는 프로젝트 유닛의 소유를 증명하는 보험 정책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증서 또는 정책은 이에 반하는 주장이 있지 않는 이상 증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4.03. **추가 자격.** 회원권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내 유닛의 소유 (2) 유닛의 취득 이후 잔금 납부 시 유지보수 예비기금으로써 최대 2 개월 상당의 예상 월납금 납부. 이 기금은 소유에 관한 비용과 협회 공통 이권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활용된다. 추가적인 가입금 또는 비용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납입금, 부과금 또는 요금의 설립증명서 또는 신고서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경우 가능하다.

4.04. **회원 증서.** 이사회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이사회가 지정하는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발급된 경우, 회원임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는 순차적인 번호가 부여된다. 각 회원의 이름과 주소, 증서 발급 일은 협회 기록에 입력하며 협회 등록 사무소의 사무국이 유지한다.

제 5 조 -- 투표권

5.01. **투표.** 투표권은 신고서에 명시된 공식과 개정사항에 따라 각 회원에게 배분한다.

5.02. **대리인.** 모든 회원 회의에서 각 회원은 직접 또는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든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협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든 대리인은 자격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원 유닛의 이전 또는 서기가 회원의 사망 통지 또는 해당 회원의 무능력에 대해 통지 받은 경우 자동으로 중단된다. 대리인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대리인은 집행 일로부터 11 개월 후에 유효하지 않는다.

5.03. **정족수.** 모든 회에서 투표권의 20 % 이상을 행사할 자격이있는 회원이 직접 또는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 관리 기구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정족수가 달성된다. 회원 회의에서 정족수가 없을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 참석 한 과반수의 회원은 회의 날짜로부터 5 일 이상 또는 30 일을 초과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휴회할 수 있다.

본 문서는 편의를 위하여 한국어 번역본으로 마련된 것이며, 영문본과 한국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모든 측면에서 영문본이 우선한다.

5.04. **필요한 투표수.** 정족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출석하거나 대리인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다수의 투표권은 정관, 신고서, 협회 증명서 또는 본 내규에 의해 더 많은 투표가 요구되지 않는 한, 참석한 회원 회의의 행위로 간주한다.

5.05.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6 조 - 회원 회의

6.01. **연례 회의.** 협회 회원의 첫 회의는 51%의 유닛의 판매가 종료된 후 45 일 이내에 또는 첫번째 유닛판매 종료 후 6 개월 이내 중 더 빠른 날짜에 개최된다. 협회 회원의 연례 회의는 각 연도의 3 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 시에 열린다. 회원의 연례 회의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법정 공휴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아닌 첫날 같은 시간에 회의를 개최한다.

6.02. **특별 회의.** 회원의 특별 회의는 회장, 이사회 또는 협회의 총 투표권의 20% 이상을 대표하는 회원이 소집 할 수 있다.

6.03. **장소.** 이사회는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원 회의는 프로젝트 내에서 또는 프로젝트와 가까운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6.04. **회의 통지.** 모든 회원 회의에 대한 서면 통지는 협회 서기 또는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면으로 회원 박스에 투입하거나 사본을 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는 각 회원에게 최소 회의 10 일 전부터 최대 50 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의 사본은 프로젝트에 있는 공개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통지는 협회의 기록에 마지막으로 표시된 회원의 주소로 발송되거나 통지를 목적으로 해당 회원이 명시한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통지는 회의 장소, 요일 및 시간, 특별 회의의 경우 회의 주제를 명시해야 한다.

6.05. **회의 순서.** 회원 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a) 출석 확인
- (b) 회의 통지 또는 통지 면제의 증명
- (c) 전 회의 회의록 낭독
- (d) 임원 보고

- (e) 위원회 보고
- (f) 이사 선출
- (g) 미완 업무
- (h) 새로운 업무

제 7 조 - 이사회

7.01. **인원과 자격.** 이 협회의 업무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그 인원은 설립 증명서 및 그 개정에 최초 이사 인원이 명시되어 있다. 그 후, 이사의 수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수시로 결정되나, 이사회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의 수의 감소는 현직 이사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없다. 선임자가 임명 한 최초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7.02. **임기.** 협회의 첫 회의에서 회원은 첫 연례 이사 선거를 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최초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협회의 첫 회의 후, 이사는 회원의 연례 회의에서 선출되며 1년 임기 및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7.03. **사직.** 이사는 협회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인해 사유 없이 사직 될 수 있다.

7.04. **공석.** 이사의 사망,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해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나머지 이사는 과반수 투표로 만료되지 않은 전임 임기 동안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사 수의 증가로 인해 채워지는 이사는 연례 회원 회의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요청 된 특별 회의에서 선출 되어야 한다.

7.05. **보상.** 협회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사전에 허가 받은 이사는 협회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이사에 의해 발생한 실제 비용에 대해 이사회에 의해 상환될 수 있다.

7.06. **권한 및 임무.** 이사회는 본 프로젝트의 관리기구에 열거된 권한 및 임무와 권한 및 임무에 대한 제한을 갖는다. 협회 회원의 결의 또는 협회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임무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a). 콘도 프로젝트, 일반 및 공통 요소, 구역, 지역권의 업무와 유지보수 업무.

본 문서는 편의를 위하여 한국어 번역본으로 마련된 것이며, 영문본과 한국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모든 측면에서 영문본이 우선한다.

- (b). 협회 회원으로부터 납입금을 입금 받고 이로 인한 수익을 협회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
- (c). 보험 구입, 보험금의 지급 및 분배 업무.
- (d). 특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콘도 공통 구역이나 그 부분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복구, 수리, 또는 재건설. 토지수용권으로 인한 콘도 또는 그 일부분의 매입에 대하여 소유자 협회를 대신하여 협상 진행.
- (e) 콘도 프로젝트의 관리 지원, 운영, 유지보수 및 행정 업무를 위해 직원, 회사, 기업 또는 기타 에이전트의 계약 업무.
- (f) 협회의 목적을 위하여 협회를 대신하여 부동산 또는 재산의 매입, 유지보수, 개선, 구입, 운영, 관리, 판매, 전달, 지정, 저당, 지역권 부여 또는 임대하는 업무.
- (g) 협의 사업 관련 자금 대출 및 채무 상태 증빙 문서 발급 업무, 또한 협회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저당, 서약, 또는 기타 유치권을 협회가 소유한 재산에 설정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치는 협회 회원의 전원일치 합의를 통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 (h). 커뮤니티 정책, 규정 및 규칙 작성.
- (i). 필요, 편의 또는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콘도 행정 업무를 위한 인원 지정 및 해당 위원회에 법적으로 또는 콘도 문서상으로 이사회가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이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 (j) 유닛 공동 소유자 담보 대출을 위해 기관투자자와 규정 및 규칙 작성 또는 합의하는 업무. 이는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또는 기타 텍사스 주 연방 정부 소속의 기관에 의해 매입이 가능해야 한다.
- (k) 콘도에 관하여 Master Deed 와 콘도 내규, 정관과 관련 내규, 커뮤니티 정책, 협회 규정과 규칙의 조항의 집행, 콘도 소유자를 대리하여 소송 진행, 협회를 대리하여 클레임의 주장, 방어 및 합의를 할 수 있다.
- (l) 콘도의 관리자로서 콘도 Master Deed, 콘도 내규 및 콘도 정책, 규정 및 규칙에서 요구하거나 허가하는 모든 행동.
- (m) Master Deed, 콘도 내규 및 콘도 정책, 규정 및 규칙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동소유자에게 제공.
- (n) 텍사스주법에서 비영리 단체에 선사하는 모든 권한으로 금지되지 않은 모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콘도의 행정, 관리, 유지보수, 수리, 대체 및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그 어떠한 행동, 계약 수행 및 필요에 의하거나 부수적이거나 편의에 의한 권한 집행.

7.07. 이사 책임. 이사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협회 이사로서 이사의 자격을 가진 행위 또는 누락에 대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협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문서는 편의를 위하여 한국어 번역본으로 마련된 것이며, 영문본과 한국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모든 측면에서 영문본이 우선한다.

- (a) 협회에 대한 충성 의무의 위반;
- (b) 이사의 선의가 아닌 행위 또는 누락 또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또는 법 위반을 인지하고 위반하는 행위;
- (c) 이사의 권한 내 또는 권한 외의 행위로 이사가 부적절한 이익을 취한 거래;
- (d) 법령에 의해 책임이 명시된 행위 또는 누락. 제 7 조의 개정 또는 폐지, 또는 본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설립 증명서 개정문의 결의는 개정, 폐지, 불일치 조항 적용 전 본 조항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 소송, 또는 클레임에 관하여 본 조항의 효력을 면제하거나 저하시키지 못한다. 텍사스 주 Business Organizations Code 또는 후계 법령이 이사의 개인적 책임을 추가적으로 면책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사 협회의 책임은 텍사스 주 Business Organization Code 또는 후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로 책임을 면책하거나 제한한다.

제 8 조 - 이사의 지명 및 선임

8.01. **지명.** 이사회 선출은 회원 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8.02. **선거.** 이사는 연례 협회 회원 회의에서 선출된다.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각 공식 이사와 관련하여 신고서의 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만큼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된다.

제 9 조 - 이사 회의

9.01. **정기 회의.** 이사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 내에 프로젝트 내 한 장소에서 개최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해 수시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정기적인 회의 장소는 공통 구역 내 주요한 공간에 게시하여야 한다.

9.02. **특별 회의.** 이사회 특별 회의는 협회 회장 또는 회장 이외의 2 명의 이사가 서명한 서면 통지로 소집 될 때 개최된다. 통지서에는 회의 시간과 장소 및 고려해야 할 주제가 명시되어야 한다. 특별 회의에 대한 통지는 개별적으로 전달 된 서면 통지에 의해 그러한 회의에 대해 정해진 날짜보다 3 일 이상 또는 15 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제공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협회 기록에 명시된 이사의 주소로 각 이사에게 이메일로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의 사본은 회의 날짜로부터 3 일 전까지 프로젝트의 공통 구역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9.03. **정족수.** 이사회 운영을 위한 정족수는 본 내규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수의 과반수이다.

9.04. **투표 요건.** 정족수를 달성한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이사의 행위는 신고서, 협회 설립 증명서 또는 본 내규에 의해 더 많은 투표가 요구되지 않는 한, 참석한 이사회 행위로 간주한다.

9.05. **열린 회의.** 이사회의 정기 및 특별 회의는 협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개된다. 단, 이사회에 없는 협회 회원은 이사회 정족수 과반수 이상이 허용하지 않은 이상 심의 또는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9.06. **임원 회의.** 정족수의 과반수의 승인할 경우 이사회는 휴회를 하고 임원 회의에서 인사 문제, 협회가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소송, 계약 협상, 집행 조치, 기타 회원의 기밀 관련 업무, 그리고 유관 인원이 기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임원 세션에서 논의 될 모든 주제는 먼저 공개 세션에서 발표한다.

제 10 조 임원

10.01. **임원의 열거.** 본 협회 임원은 회장, 1명 이상의 부회장, 서기 및 재무관이며 이들은 전원 항상 이사회 이사이다. 이사회 이사들은 결의안으로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다른 임원을 둘 수 있다.

10.02. **임기.** 이 협회의 임원은 매년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임원이 조기에 사임하거나, 사퇴되거나 수행할 자격을 잃지 않는 한 각 임원은 1년 동안 임원직을 수행한다. Texas Business Organizations Code 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03. **사직 및 사퇴.** 임원은 언제든지 이사회, 회장 또는 장관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사임 할 수 있다. 그러한 사임은 통지를 접수 한 날 또는 통지에 명시된 일자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회 판단으로 협회에게 사퇴가 이득이 될 경우 그 어떠한 임원도 사퇴를 할 수 있다.

10.04. **다수 보직.** 회장과 서기를 제외하고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의 보직을 가질 수 있다.

10.05. **보상.** 임원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협회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해 승인된대로 협회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제 11 조 회장

11.01. 선거. 이사회의 첫 번째 회의와 회원의 연례 회의 직후 각 연례 회의에서, 이사회는 회장으로 활동할 이사를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11.02. 임무.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a) 회원과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 (b) 모든 행위, 계약 및 이사회가 사전에 승인된 기타 서면 기구를 회장으로로서 서명한다. 단 이사회가 정당하게 채택된 결의안으로 다른 임원의 서명을 허가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 (c) 규칙과 이사회가 합의한 통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통지 기간은 비상 사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3 일 이상이다.
- (d) 이사회의 조언에 따라 협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지시 및 통제를 받고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의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e) 협회가 기록하는 법령이 요구하는 선언에 대한 모든 개정안을 준비, 실행, 인증하고 기록한다.

제 12 조 - 부회장

12.01. 선거. 이사회의 첫 번째 회의 및 연례 회의 직후의 연례 회의에서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한다.

12.02. 임무.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a) 회장의 부재, 불능 또는 임무를 거절할 경우 회장 대신에 행동한다.
- (b) 이사회 부회장이 요구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추가 임무는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3 조 - 서기

13.01. 선거. 이사회의 첫 번째 회의 및 회원의 연례 회의 직후 각 연례 회의에서 이사회는 서기를 선출한다.

13.02. 임무. 장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 (a) 모든 이사회 회의와 회원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b) 협회의 인장이 있으면 이를 밀봉하고 밀봉이 필요한 모든 종이에 부착한다.

- (c) 법이나 본 내규에 의해 요구되는 이사회와 회원 회의에 대한 통지를 한다.
- (d) 협회 회원 및 회원 주소를 명시한 현행 기록을 유지한다.
- (e) 이사회가 다른 임원이 서기 대신에 사인하도록 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가 두 번째 협회 서명을 요구할 경우 이사회가 우선 승인한 모든 증서, 계약서 및 기타 기구를 서명한다.
- (f) 협회가 기록하는 법령이 요구하는 신고서에 대한 모든 개정안을 준비, 실행, 인증 및 기록한다.

제 14 조 - 재무관

14.14. 선거. 이사회의 첫 번째 회의 및 회원의 연례 회의 직후 각 연례 회의에서 이사회는 재무관을 선출한다.

14.02. 임무. 재무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a) 이사회가 지시하는 바대로 경우 협회 모든 기금을 은행에 예치한다.
- (b) 협회 자산과 기타 협회 재산에 대한 기록의 관리를 감독하고 책임진다.
- (c)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대로 자금을 지출 및 인출한다.
- (d) 신고서에서 요구하는 협회의 재무 제표를 준비하고 배포한다.

제 15 조 - 책과 기록

15.01. 유지. 회원, 이사 및 위원회 회의의 회의 기록 및 회의록의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은 협회의 등록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회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 된 기록은 협회의 등록 사무소 또는 주요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15.02. 검사. 프로젝트의 관리 기구, 회원 기록, 회계 장부 및 진행 의사록은 적절한시기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협회 회원 또는 이사가 검사 및 복사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6 조 - 일반 조항

16.01.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협회 정족수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회원의 대리 또는 대리인 협회 회원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개정, 변경 또는 폐지 될 수 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항 또는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은 해당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찬성표의 비율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본 문서는 편의를 위하여 한국어 번역본으로 마련된 것이며, 영문본과 한국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모든 측면에서 영문본이 우선한다.

16.02. **해산 및 분배.** 협회는 미국과 텍사스 주법에 따라 해산 될 수 있다. 해산시 협회의 모든 자산은 미국 국세 법, 텍사스 주법 및 협회 설립 증명서에 따라 분배된다.

16.03. **회계 연도.** 협회의 회계 연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6.04. **카운터파트; 팩스 서명.** 본 내규에 의해 회원, 이사,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서명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된 서면 문서는 둘 이상의 카운터파트가 집행할 수 있으며, 이를 한 기구로 간주하며, 그러한 회원, 이사, 임원 또는 위원회 회원은 동일한 카운터파트에 서명 할 필요가 없다. 팩스 또는 스캔 전송으로 서명이 전달되는 경우, 해당 서명은 해당 팩스 또는 스캔 서명 페이지가 원본 인 것처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16.05. **증인.** 정당하게 선출되고 자격을 갖춘 협회 장관 인 아래 서명자는 상기 조례가 2013 년 12 월 11 일 현재 협회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증명한다.

증인:

Bo Young Chung, 서기

본 문서는 편의를 위하여 한국어 번역본으로 마련된 것이며, 영문본과 한국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모든 측면에서 영문본이 우선한다.

EXHIBIT "A"

법적 설명

Furneaux Creek Company, Phase 2, Lot 1, Block A는 Carrollton시, 델러스 카운티, 텍사스의 추가이며 이는 Real Property Records of Dallas County, Texas에 문서번호 #201200219918으로 2012년 7월 27일에 제출된 계획이 따른 것으로 1100 Trinity Mills Rd., Carrollton, Texas라고도 한다.